

본 문서는 미리보기로 문서 일부가 손상된 파일입니다. 구매하시면 온전한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온전한 파일은 형법, 형소법, 사회법, 국제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현우소 내의 완성, 인간의 완성  
4-STEP

법정

내 신 일 등급 을 위 한  
최 고 의 디 렉 션 현 우 소

Chapter

I

단권화  
고난도 주제  
개념트리 및  
셀프테스트

## 형법 단권화 개념트리

### 1) 형법&죄형법정주의

1. 의미 :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

2. 역할 : 범죄 예방 및 방지. 국가 형벌권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&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남용 방지→ 보장적 기능

3. 죄형법정주의 ; 헌법§12  
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

지 아니하고는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, 법률과 적법한  
노역을 받지 아니한다.

① 성문법률주의(=관습형  
→ 법률에 근거가 없  
형§1① 범죄의 성립과

형벌이 의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 
형식으로도 처벌할 수 없음.  
의한다.

② 명확성의 원칙 : 범죄

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함

③ 소급효 금지의 원칙 :  
cf) 소급 입법이 정의  
헌§13① 모든 국민의  
형§1① 범죄의 성립과  
형§1② 범죄후 법률의

적용해서는 안 됨 → 범죄와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함 not 재판시  
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,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
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~  
의한다.

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  
cf) 피고인에게 유리

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.  
항을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

⑤ 적정성의 원칙 : 범죄

안 된다는 원칙

### 2) 범죄의 성립요건 → 순

1. 구성요건의 해당성 : 법률

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함

2. 위법성 : 사회 법질서에  
cf) 위법성 조각 사유

해당 → 위법성 추정)

- ① 정당방위 : 자신
- ② 긴급피난 : 자신
- ③ 자구행위 : 자신
- ④ 피해자의 승낙 :
- ⑤ 정당행위 : 법령  
ex) 교도관의 업

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 
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 
여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행위  
해를 허락한 경우  
사회 상규로 위배되지 않는 행위  
변호인, 현행범 체포, 교사의 경미한 체벌 등

3. 책임성 : 사회적 비난 가

기대 가능성

- cf) 책임 조각 사유
- ① 형사미성년자만
- ② 심신 장애로 인하
- ③ 저항할 수 없는

는 자의 행위  
생명, 신체에 대한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

### 3) 형벌과 보안처분

#### 1. 형벌의 종류

- ① 사형 : 법정 최고형
- ② 구류 :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교도소 구금
- ③ 징역 : 강제 노역 + 30일 이상의 교도소 구금
- ④ 금고 : 노역이 없는 30일 이상의 교도소 구금
- ⑤ 자격상실, 자격정지
- ⑥ 벌금 : 5만원 이상의 재산형
- ⑦ 과료 :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  
cf) 행정상의 처분인 과태료와 구분됨
- ⑧ 몰수 : 범죄와 관련된 물건과 수익금을 몰수

#### 2. 보안처분

- 형벌 이외의 형사 제제로 형벌과 동시에 행해질 수 있음
-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사 제제이므로 국가만 수행 가능
- 형벌이 아니므로 책임이 조각되어도 처분 가능  
ex) 보호관찰, 치료 감호 등

# 형법 단권화 개념트리 셀프테스트

## 1) 형법&죄형법정주의

1. 의미 :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

2. 역할 : 범죄 예방 및 방지, 국가

3. \_\_\_\_\_ ; 헌법§12① ~  
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·

① \_\_\_\_\_ (= \_\_\_\_\_

→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명  
형§1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

② \_\_\_\_\_ : 범죄와 형

③ \_\_\_\_\_ : 형법의

cf) 소급 입법이 정의에 더  
헌§13① 모든 국민의 \_\_\_\_\_

형§1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

형§1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

④ \_\_\_\_\_

cf) \_\_\_\_\_ 에게 유리한 \_\_\_\_\_

⑤ \_\_\_\_\_ : 범죄에

자의적 형벌권 남용 방지→ 보장적 기능

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, 법률과 적법한

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

벌은 \_\_\_\_\_ 의 법률에 의함 not \_\_\_\_\_

법보다 경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

소추되지 아니하며 ~

구법보다 [중한/경한]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.

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

## 2) 범죄의 성립요건 → 순서대

1. \_\_\_\_\_ : 법률에서

2. \_\_\_\_\_ : 사회 법질서에 위반하

cf) 위법성 조각 사유

① \_\_\_\_\_ : 자신 또는

② \_\_\_\_\_ : 자신 또는

③ \_\_\_\_\_ : 자신의 \_\_\_\_\_

④ \_\_\_\_\_ : 피

⑤ \_\_\_\_\_ : 법령이나

ex) \_\_\_\_\_, \_\_\_\_\_

한 행위

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행위

\_\_\_\_\_ 등

3. 책임성 : 사회적 비난 가능성,

cf) 책임 조각 사유

① \_\_\_\_\_ ( \_\_\_\_\_

② \_\_\_\_\_ 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

③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\_\_\_\_\_ 의 \_\_\_\_\_ 에 대한 \_\_\_\_\_ 에 의해 강요된 행위

## 3) 형벌과 보안처분

### 1. 형벌의 종류

① 사형 : 법정 최고형

② 구류 : 1일 이상 \_\_\_\_\_ 미만의 교도소 구금

③ 징역 : \_\_\_\_\_ + \_\_\_\_\_ 의 교도소 구금

④ 금고 : 노역이 없는 \_\_\_\_\_ 의 교도소 구금

⑤ 자격상실, 자격정지

⑥ 벌금 : \_\_\_\_\_ 이상의 재산형

⑦ 과료 : \_\_\_\_\_ 이상 \_\_\_\_\_ 미만

cf) 행정상의 처분인 \_\_\_\_\_ 와 구분됨

⑧ 몰수 : 범죄와 관련된 물건과 수익금을 몰수

### 2. 보안처분

· 형벌 이외의 형사 제재로 형벌과 동시에 행해질 수 있음

·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사 제재이므로 \_\_\_\_\_ 만 수행 가능

· 형벌이 아니므로 책임이 조각되어도 처분 가능

ex) \_\_\_\_\_, \_\_\_\_\_ 등

## 조문 연구 3: 헌법 및 형법 총칙 조문

### 헌법

**제 12조**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.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,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·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.

**제 13조**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,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

### 형법

#### 제1조(범죄의 성립과 처벌)

- 시의 법률에 의한다.
-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벌
-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

**제9조(형사미성년자)** 14세 아니한다.

- 제10조(심신장애인)** ①심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하지 아니한다.
-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형을 감경한다.
  -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

**제11조(농아자)** 농아자의

**제12조(강요된 행위)** 저형 친족의 생명, 신체에 대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

**제13조(범의)** 죄의 성립요는 별하지 아니한다. 단,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14조(과실)** 정상의 주의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

- 제15조(사실의 착오)** ①특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
-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별하지 아니한다.

**제16조(법률의 착오)**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별하지 아니한다.

**제17조(인과관계)**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

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별하지 아니한다.

**제18조(부작위범)**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.

**제19조(독립행위의 경합)**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관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.

업무로 인한 행위  
별하지 아니한다.

에 대한 현재의  
당한 이유가 있는

정황에 의하여 그

안스러운 상대하  
한 때에는 별하지

에 대한 현재의  
가 있는 때에는

대하여는 전항의

준용한다.

구권을 보전하기  
는 현저한 실행공  
있는 때에는 별

는 정황에 의하여

의 승낙에 의하여  
규정이 없는 한

행위를 종료하지  
에는 미수범으로

다.

**제26조(중지범)**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.

**제27조(불능범)**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. 단,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**제28조(음모, 예비)**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



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하지 아니한다.

**제29조(미수범의 처벌)**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.

**제30조(공동정범)**

각자를 그 죄의

**제31조(교사범) ①**

를 실행한 자와

②교사를 받은

에 이르지 아니

예비에 준하여

③교사를 받은

도 교사자에 대

**제32조(종범) ①**

한다.

②종범의 형은

**제33조(공범과 신**

공한 행위는 신

적용한다. 단,

에는 중한 형으

**제34조(간접정범,**

어느 행위로 인

로 처벌되는 자

발생하게 한 자

다.

②자기의 지휘,

항의 결과를 발

한 형의 장기 또

인 때에는 정범

**제41조(형의 종류**

1. 사형

2. 징역

3. 금고

4. 자격상실

5. 자격정지

6. 벌금

7. 구류

8. 과료

9. 몰수

**제42조(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)**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. 단,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.

**제43조(형의 선고와 자격상실, 자격정지) ①**사형,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

상실한다.

1. 공무원이 되는 자격

2.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

의 업무에 관한 자격

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

되는 자격

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

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

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

따른다.

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

이하로 한다.

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

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

으로 한다. 다만, 감경하는 수 있다.

30일 미만으로 한다.

5만원 미만으로 한다.

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

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

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

공하려고 한 물건.

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

건.

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

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

그 부분을 폐기한다.

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. 단,

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

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.

**제50조(형의 경중) ①**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. 단,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.

②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.

③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.



현우소 내의 완성, 인간의 완성  
4-STEP

법정

내 신 일 등급 을 위 한  
최 고 의 디 렉 션 현 우 소

Chapter

II

마더텅 선지정리  
OX퀴즈

## 1) 형법과 형사소송법

	기출코드	선지	O/X
1	1307#8(5)	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.	
2	1307#8(5)	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불소급 원칙의 차이는 이가 다음 같은 범죄는 저지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.	
3	1806#19(21)	범죄 현장에서 적법한	해당하지 않는다.
4	14예비#17(29)	보안처분은 국가 또는	
5	14예비#17(29)	보안처분은 행위자에게	
6	0909#19(30)	징역에 대해 그 집행을	
7	0909#19(30)	징역과 사형의 경우 법	
8	1506#16(7)	수사단계와 기소단계 사	은 석방된다.
9	1506#16(변)	수사단계와 기소단계 사	은 석방된다.
10	1404#17(8)	공판단계에서 구속 상태	
11	1806#17(14)	경찰이 구속 수사 후 사	이 필요하다.
12	1806#17(14)	국민 참여 재판에서 민	
13	1806#17(변)	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	
14	1606#13(15)	기소유예를 받은 갑과 1	청구할 수 있다.
15	1606#13(15)	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	였다.
16	17수능#13(19)	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	않는다면 검사는 갑에 대
17	1310#14(20)	선고유예는 징역 3년에	
18	1310#14(변)	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	지나면 면소된다.
19	16수능#16(23)	기소 전 조사 결과에 따	청구할 수 있다.
20	16수능#16(23)	검사는 갑(18세)을 기소	
21	16수능#16(23)	갑(18세)이 부과 과제	고될 수 있다.
22	1606#16(24)	절도 피해를 입은 을은	
23	1607#8(27)	보호 처분 결정에 불복	
24	1709#14(28)	검사가 C(18세)를 기소	수 있다.
25	1709#14(28)	A(13세), C(18세)는 소	
26	15수능#16(30)	검사는 소년부 송치와	력, 생활, 환경 등을 조사하
27	15수능#16(30)	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갑	
28	1504#10(31)	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	
29	11수능#20(32)	형사부에서는 갑(만 17	호 위탁을 명할 수 있다.
30	1507#15(15)	성인 범죄 사건의 판결	을 청구할 수 있다.
31	1707#17(34)	갑(13세)은 수사 단계에서 형사부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질 수 있다.	
32	1009#5(37)	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한다.	
33	1409#16(39)	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건의 피고인은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	



## 1) 형법과 형사소송법 도플X1

	기출코드	선지	O/X
1	1307#8(5)	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.	
2	1307#8(5)	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불소급이다.	극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
3	1806#19(21)	범죄 현장에서 적법한 절차	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.
4	14예비#17(29)	보안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	
5	14예비#17(29)	보안처분은 행위자에게 범죄	있다.
6	0909#19(30)	징역에 대해 그 집행을 유여	
7	0909#19(30)	징역과 사형의 경우 법정형	
8	1506#16(7)	수사단계와 기소단계 사이에	이면 을은 석방된다.
9	1506#16(번)	수사단계와 기소단계 사이에	이면 을은 석방된다.
10	1404#17(8)	공판단계에서 구속 상태를	수 있다.
11	1806#17(14)	경찰이 구속 수사 후 사건을	영장이 필요하다.
12	1806#17(14)	국민 참여 재판에서 민법상	다.
13	1806#17(번)	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단	
14	1606#13(15)	기소유예를 받은 갑과 1심	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15	1606#13(15)	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	수 없다.
16	17수능#13(19)	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하여 금고에 처한다는 결정.	부하지 않는다면 검사는 갑에 대
17	1310#14(20)	선고유예는 징역 3년에 해	
18	1310#14(번)	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최	)년이 지나면 면소된다.
19	16수능#16(23)	기소 전 조사 결과에 따라	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20	16수능#16(23)	검사는 갑(18세)을 기소 유	있다.
21	16수능#16(23)	갑(18세)이 부과 과제 명령	가 선고될 수 있다.
22	1606#16(24)	절도 피해를 입은 을은 범죄	
23	1607#8(27)	보호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	
24	1709#14(28)	검사가 C(18세)를 기소할	받을 수 있다.
25	1709#14(28)	A(13세), C(18세)는 소년법	다.
26	15수능#16(30)	검사는 소년부 송치와 달리 여야 한다.	행, 경력, 생활, 환경 등을 조사하
27	15수능#16(30)	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갑(17	
28	1504#10(31)	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판사	
29	11수능#20(32)	형사부에서는 갑(만 17세)에	의 감호 위탁을 명할 수 있다.
30	1507#15(15)	성인 범죄 사건의 판결에서	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31	1707#17(34)	갑(13세)은 수사 단계에서	다.
32	1009#5(37)	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한다.	
33	1409#16(39)	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건의 피고인은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	

현우소 내의 완성, 인간의 완성  
4-STEP

법정

내 신 일 등급 을 위 한  
최 고 의 디 렉 션 현 우 소

Chapter

III

마더텅 선지정리  
OX 퀴즈 정답

## 1) 형법과 형사소송법 정답

	기출코드	선지	O/X
1	1307#8(5)	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직서으지이 모전옥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.	
2	1307#8(5)	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불소급이다.	
3	1806#19(21)	범죄 현장에서 적법한 절차	
4	14예비#17(29)	보안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	
5	14예비#17(29)	보안처분은 행위자에게 범죄	
6	0909#19(30)	징역에 대해 그 집행을 유예	
7	0909#19(30)	징역과 사형의 경우 법정형	
8	1506#16(7)	수사단계와 기소단계 사이에	
9	1506#16(변)	수사단계와 기소단계 사이에	
10	1404#17(8)	공판단계에서 구속 상태를	
11	1806#17(14)	경찰이 구속 수사 후 사건을	
12	1806#17(14)	국민 참여 재판에서 민법상	
13	1806#17(변)	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단	
14	1606#13(15)	기소유예를 받은 갑과 1심	
15	1606#13(15)	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	
16	17수능#13(19)	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하여 금고에 처한다는 결정	
17	1310#14(20)	선고유예는 징역 3년에 해당	
18	1310#14(변)	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최	
19	16수능#16(23)	기소 전 조사 결과에 따라	
20	16수능#16(23)	검사는 갑(18세)을 기소 유	
21	16수능#16(23)	갑(18세)이 부과 과제 명령	
22	1606#16(24)	절도 피해를 입은 을은 범죄	
23	1607#8(27)	보호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	
24	1709#14(28)	검사가 C(18세)를 기소할 경	
25	1709#14(28)	A(13세), C(18세)는 소년법	
26	15수능#16(30)	검사는 소년부 송치와 달리	
27	15수능#16(30)	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갑(17	
28	1504#10(31)	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판사	
29	11수능#20(32)	형사부에서는 갑(만 17세)에	
30	1507#15(15)	성인 범죄 사건의 판결에서	
31	1707#17(34)	갑(13세)은 수사 단계에서	
32	1009#5(37)	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	
33	1409#16(39)	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건	